

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

□ 세부유형 : 신장장애

구비서류	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
1.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	- 투석치료자 : 진단명(만성신부전증), 최초투석일, 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 - 신장이식자 :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
2. 진료기록지	-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3개월 이상 투석 중인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투석(진료)기록지 제출 ※ 투석기록지 제출 예시 : 1월10일(최초투석일), 2월15일, 3월1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경과한 시점(4월10일 이후)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을 제출하여야함. - 진단서에 진단명, 최초투석일, 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지 생략 가능 ※ 단,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(투석액 표기)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※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(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반드시 제출)
※ [구비서류 완화대상] 혈액·복막투석 중인 의무재판정 대상자는 진단서 및 진료(투석) 기록지 제출 생략 가능 - 단, '의료기관 방문내역확인서' 및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상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' 제출 필수 ※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·제출하여야 합니다.	
[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]	
-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만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-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, 만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-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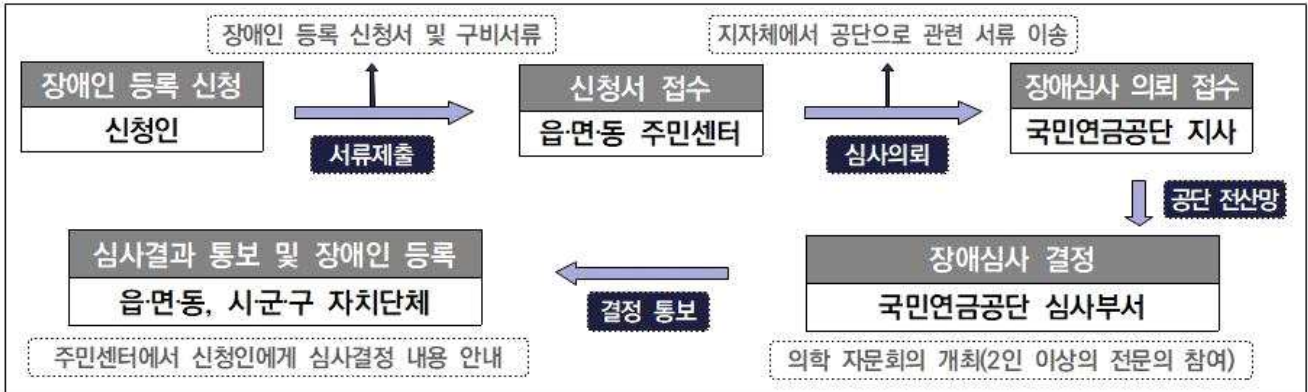
최저 장애정도 기준

- 만성신부전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
-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

장애인 등록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

□ 장애인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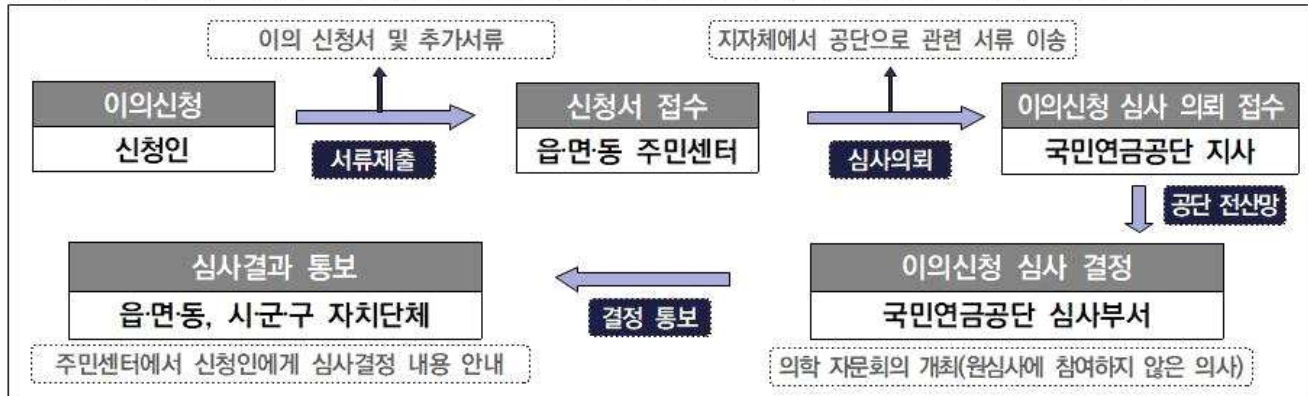
정확한 장애인 등록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장애의 상태 및 정도에 대한 **장애심사**를 실시합니다.



- 장애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, 소견서, 진료기록,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**2인 이상의 전문의사가 참여하는 의학자문회의**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합니다.
- 제출된 심사자료로 장애상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 **추가자료 제출**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 - 희망 시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사자료를 발급 대행하는 서비스 제공(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)

□ 이의신청

장애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, 관련 절차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

- 이의신청은 **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**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은 **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**(장애정도심사규정 제13조 제1항) 합니다.
- ‘이의신청서’ 양식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,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심사의 객관성 강화를 위해서 **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**로 자문회의를 구성합니다.
-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**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시·도 행정심판위원회) 또는 행정소송(행정법원)**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
- ※ 단,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 가능